

하나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 시행일 : 2013.2.21(목)

2. 개정 내용

현행	개정	비 고
<p>제 1 조 (목적)</p> <p>하나 해외이주·유학클럽 서비스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외국환 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u>유학하게 될</u> 고객에게 제공하는~(이하생략)</p>	<p>제 1 조 (목적)</p> <p>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이하 ‘약관’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u>유학(예정)</u> 고객에게 제공하는 ~(좌 등)</p>	유학고객 추가
<p>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p> <p>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단, 본 약관 제3조 5의 프리미어 서비스는 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p>	<p>제 2 조 (서비스의 이용대상)</p> <p>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삭 제)</p>	프리미어서비스 요건 삭제
<p>제 3 조 (서비스의 종류)</p> <p>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p> <p>1. 자동이체 서비스 : 고객의 기본계좌에서 은행 및 타행의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의 자금이체, 지로대금 납부</p> <p>2. 예약이체 서비스 : 제1호의 업무에 대해 예약을 받아서 처리</p> <p>3. 수시지급 서비스 : FAX 및 E-mail 등으로 고객의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지급지시를 받아서 <u>지급처리, 단 E-mail의 경우에는 본인명의 해외은행 계좌로의 송금, 당행내 본인명의 계좌간 이체에 한한다.</u></p> <p>4. 자금운용 및 보관서비스 : (이하생략)</p> <p>5. 프리미어 서비스 : 해외 유학관련 및 해외 현지부동산 취득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정보제공</p>	<p>제 3 조 (서비스의 종류)</p> <p>(좌 등)</p> <p>1~2. (삭 제)</p> <p>1.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 FAX 또는 E-mail로 고객의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지급지시를 받아서 <u>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지급처리, 단, 타인 앞 해외송금 및 계좌이체는 제한</u></p> <p>2.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 (좌 등)</p> <p>5. (삭 제)</p>	<p>자동이체서비스 삭제</p> <p>예약이체서비스 삭제</p> <p>ARS방식으로 변경</p> <p>타인앞 해외송금 및 계좌이체 제한신설</p> <p>프리미어서비스 삭제</p>

<p>제 4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p> <p>① <u>자동이체, 예약이체, 수시지급 등 업무의 서비스시간은</u>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으로 한다.</p> <p>② FAX 및 E-mail 등에 의한 수시지급이 <u>영업시간</u> 중에 접수되는 경우 당일 중 처리하고, <u>영업시간</u>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중에 처리하기로 한다</p> <p>(신 설)</p>	<p>제 4 조 (서비스 이용시간)</p> <p>① <u>서비스시간은</u>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으로 한다.</p> <p>② FAX 및 E-mail 등에 의한 수시지급이 <u>은행의 영업시간</u> 중에 접수되는 경우 당일 중 처리하고, <u>은행의 영업시간</u>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p> <p>③ <u>서비스 신청 당일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FAX 또는 E-mail을 통한 수시지급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한다.</u></p>	<p>삭제 업무내역 반영</p> <p>은행의 영업시간으로 명시</p> <p>당일 ARS 인증 원칙 신설</p>
<p>제 5 조 (내용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 5 조 (좌 등)</p> <p>제 6 조 (약정방법)</p> <p>① <u>고객이 은행에 내점 하여 서비스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약정을 체결한다.</u></p> <p>② <u>고객이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내점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문서를 송부하여 은행에서 수령을 확인한 때 그 약정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u></p>	<p>약정방법 내용신설</p>
<p>(신 설)</p> <p>(신 설)</p> <p>제 6 조 (수시지급서비스 처리방법)</p> <p>① <u>수시지급은 FAX, E-mail 등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인출하여 고객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다.</u></p> <p>② 전항에 의한 <u>수시지급은 FAX로 송부받은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및 암호가 일치하면 처리하기로 하고, E-mail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E-mail</u></p>	<p>제 7 조 (거래 내용의 전자 녹취)</p> <p><u>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한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u></p> <p>제 8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처리방법)</p> <p>① <u>수시지급거래는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FAX 또는 E-mail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고객의 본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한다.</u></p> <p>② 전항에 의한 <u>수시지급거래는 FAX로 송부받은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하고, E-mail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약정서에</u></p>	<p>거래 내용의 전자 녹취 신설</p> <p>ARS 비밀번호 입력 방식내용 신설 및 처리조건 변경</p>

<p><u>주소, 비밀번호 및 암호가 일치하면 처리하기로 한다.</u></p> <p>③ (내용생략)</p> <p><u>제 7 조 (수시지급서비스 처리한도)</u> 수시지급서비스 처리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p> <p><u>제 8 조 (서비스의 정정, 취소)</u> 서비스를 받은 후 거래내용의 정정, 취소는 은행에서 실행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9 조 (서비스의 제한)</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u>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3. (내용생략) 4.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u>인정했을 때</u> 5. <u>비밀번호, 암호, E-mail주소,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한 때</u></p> <p>② (내용생략)</p> <p>(신 설) (신 설) (신 설)</p> <p>제 10 조 (이용수수료 등) ① ~ ② (내용생략)</p>	<p><u>기재된 E-mail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하기로 한다.</u></p> <p>③ (좌 등)</p> <p><u>제 9 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u>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업무 범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p> <p><u>제 10 조 (서비스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u> 서비스 신청 후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는 은행의 지급거래 실행 전에만 가능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p> <p>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3조 제1호의</u>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3. (좌 등) 4.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u>은행이 인정했을 때</u> 5. <u>수시지급청구서 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하거나, E-mail 주소가 상이한 경우,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u></p> <p>② (좌 등)</p> <p><u>제 12 조 (계좌이체의 제한)</u> ① <u>본인명의 계좌이체(자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고객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u> ② <u>본인명의 계좌이체(타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 13 조 (이용수수료 등) ① ~ ② (좌 등)</p>	<p>명칭변경</p> <p>정확한 표현사용</p> <p>제3호 서비스삭제 반영 비밀번호, 암호 상이가 ARS방식 비밀번호인증 불일치로 변경</p> <p>계좌이체 제한명시 본인명의이체(자행) 본인명의이체(타행)</p>
---	--	--

제 11 조 (거래내역서 송부)

은행은 고객이 거래내역서 송부를 FAX로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및 압호, E-mail로 요청한 경우에는 E-mail주소, 비밀번호 및 압호가 일치하면 거래내역서를 요청방식에 따라 송부하며 우편발송 시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기본계좌에서 자동 인출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 압호, 인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현지 영사의 인증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송부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은행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송부하거나 전화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 ① (내용생략)
 - 1. (내용생략)
 - 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내용생략)

제 14 조 (거래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송부)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고객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mail 주소로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를 송부한다.
 - 1. 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관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
 - 2. 고객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
- ② 우편발송 시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할 수 있다.
- ③ 은행이 제1항에 의해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를 송부한 경우 고객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 신고한 E-mail 주소변경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
- ② 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 ① (좌 등)
 - 1. (좌 등)
 - 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 3. (삭 제)
- ② (좌 등)

송부서류 추가
거래내역,예금잔액증
명서 송부조건
상세기재 및 ARS인증
절차 추가

E-mail, FAX 변경
신고강화

경미한 제신고변경은
콜센터거래로 가능

구체적 사례 명시

제 14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 15 조 (면책)

(신 설)

① 고객이 FAX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동 청구서에 적힌 비밀번호 및 암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이 E-mail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의 경우 E-mail주소, 비밀번호와 암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

② 제16조 제1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고객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유선, 신고된 FAX 및 E-mail 등으로 “서비스 해지여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면책)

① 고객이 은행에 내점 하지 아니하고 현지 영사의 인중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약정서에 대해 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여기고, 약정서의 위,변조 등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이 FAX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E-mail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의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인의 보유계좌에서 해외 송금하는 경우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하며, 고객이 요청한 수시지급청구서에 따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청서,제출방법 명시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연락불명인 고객에 대한 해지가능 내용 통지의 내용 삽입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연락불명인 고객에 대한 해지조건 추가

현지영사가 인증한 약정서의 위변조 시 은행면책추가

ARS 인증내용 추가

ARS 인증내용 추가
고객면책범위명시

해외송금처리 후 은행면책조항 추가

<p>③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객의 비밀번호 또는 암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16 조 (약관의 변경) <u>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를 따른다.</u></p> <p>제 17 조 (관할법원) <u>이 약정에 터잡은 서비스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u></p> <p>제 18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p>	<p>⑤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의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19 조 (약관의 변경) ① <u>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u> ② <u>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 ④ <u>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u> ⑤ <u>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 20 조 (관할법원) <u>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 21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p>	<p>암호조항 삭제</p> <p>공정거래위원회 수정약관내용반영</p> <p>관할법원 변경</p> <p>외국환거래기본약관 추가</p>
---	---	---

<u>(신 설)</u>	<u>< 부 칙 ></u>	부칙내용추가
<u>(신 설)</u> <u>(신 설)</u>	<u>제1조 (시행일)</u> <u>이 약관은 2013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u>	개정약관시행일 표기
<u>(신 설)</u> <u>(신 설)</u>	<u>제2조 (계좌이체 제한)</u> <u>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시행일 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타인명의</u> <u>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신청방법은</u> <u>기존과 동일하게 FAX로 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u>	개정약관이전 신청한 기존고객 서비스운용내용기재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